



얼마 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검사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Warrant of Arrest)을 청구하여 예심부가 이를 발부했습니다. ICC의 수사팀이 전투 현장과 관련 도시를 방문하여 다각도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역사상 세 번째로 이 같은 대담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는 비회원국인 수단과 리비아의 사태를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ICC에 회부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리비아의 카다피는 이내 죽었고, 2009년에 영장이 발부된 수단의 알바시르 대통령은 2019년 쿠데타로 실각한 채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ICC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회원국이 아니어서 ICC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는 의회에서 로마규정(The Rome Statute)을 비준하기 전이므로 정부가 관계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사태에 관한 관할권을 수락(acceptance)하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팀의 입국과 수사가 가능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혐의는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되어 러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됩니

다. 영장이 발부되면 ICC는 모든 국가에게 혐의자를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푸틴은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체포영장 자체를 무시해버렸지요. 러시아 정부가 그들의 대통령인 푸틴을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송 상 현
본 연맹 이사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

푸틴의 경우와 국제형사정의

만, ICC 영장은 시효가 없으므로 푸틴이 사망할 때까지 그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푸틴이 자기나라 영토에 들어오면 그를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푸틴은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행제한이나 외교활동제약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 못 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장 발부가 갖는 상징적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 등이 전쟁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를 꾸준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찾고 증언을 남겨 잊혀지지 않도록

해서 보존된 기록은 언젠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큰 의미와 쓰임새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2차 대전 당시 잔혹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독일 나치가 훗날 전쟁범죄 재판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일 단죄가 완벽하지 않았을지언정 세계는 그

들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정에 세워서 죄값을 치르게 했지요. 결국 러시아도 비슷한 궤적을 밟지 않을까요.

만일 ICC가 전쟁, 침략, 집단학살 및 인도에 반한 범죄를 수사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절차를 종결한다면 여기까지는 국내 형사법원과 다를 바 없고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소위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사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 형사정의 없이 지속가능한 평화의 확보가 불가능하다(No Peace without Justice)는 20세기에 풍미하던 시대적 흐름에 맞물려서 탄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ICC는 범인의 처

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선제적으로 재판확정 전에 구제와 보호의 손길을 뻗치는 제도를 베푼 것이 큰 특색입니다. 범인을 아무리 엄하게 단죄한들 수많은 전쟁 피해자의 형편이 개선되지는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ICC가 비록 국제개발기구나 원조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수사와 처벌 외에 이처럼 각종 선제적 피해자 구제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전통적 형사법원의 기능을 넘어 인류역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획기적 실험입니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에 걸맞게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형사소송의 규모, 복잡성 그리고 특수성에 비추어 소송확정시까지 장구한 세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피해자 보호가 ICC의 새로운 길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한 선제적 정의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CC가 실현하고자 하는 형사정의는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가해자 처벌을 통한 응보적 정의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와 치유적 정의(Reparative Justice)도 포함하는 개념이 된 것입니다.